

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

[시행 2021. 4. 12.] [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훈령 제64호, 2021. 4. 12., 일부개정]



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(신규자교육과), 043-931-6310

부칙 <제64호,2021.4.12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6]

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

1. 외래강사 강사수당

가. 일반 지급기준

구 분	지급기준	지급액 (만원)	지 급 대 상		
			공공분야	민간분야	
일반	특강 (I)	1시간당 100 이내	◦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		
	특강 (II)	최초1시간	40	◦ 전·현직 장관(급)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	◦ 대학교 총장(급)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◦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·예술·종교인·기업대표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
		초과1시간 (매시간)	20		
	특강 (III)	최초1시간	30	◦ 전·현직 차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	◦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◦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·예술·종교인·기업 임원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
		초과1시간 (매시간)	20		
	일반 (I)	최초1시간	23	◦ 전·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	◦ 특강이외 대학교수·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◦ 특강이외 기업임원(급) 인사 ◦ 시민단체 임원, 연구소 연구원 등
		초과1시간 (매시간)	12		
일반 (II)	최초1시간	12	◦ 전·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		
	초과1시간 (매시간)	10			
보조강사	1시간당	4			
정보화강사	정보화 (I)	최초1시간	15	◦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	◦ 대학교수, 박사기술사 3년이상 ◦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
		초과1시간 (매시간)	10		
	정보화 (II)	최초1시간	10	◦ 전·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	◦ 박사학위, 기술사소지자,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◦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
		초과1시간 (매시간)	8		
정보화 (III)	최초1시간	8	◦ 전·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	◦ 정보화강사1,2이외의 강사	
	초과1시간 (매시간)	7			
보조강사	1시간당	4			
11급이하(일반)강사	전체강의	S급	20	◦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	
		A급	15	◦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◦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	
		B급	13	◦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	
		C급	11	◦ 전체강의 A,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	
	분임강의	A급	11	◦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◦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	
		B급	10	◦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	
		C급	9	◦ 분임강의 A,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	
이러닝	1일 최대	2	◦ 나라배움터에서 전문답변, 업무매뉴얼, 노하우 제공 등 국가인재원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와 공유·소통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자		

- ※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(별표2)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
- ※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「청탁금지법」과 「같은 법 시행령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
- ※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항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, 20명 이상의 분임강의는 전체강의 강사료 적용
- ※ 정보화 교육과정 중 미래핵심기술의 일반분야 강사가 일반(I), 일반(II)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
- ※ 이러닝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

나.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

구분	지급기준	지급액 (만원)	지급대상
퍼실리테이터	(I)	1~3시간 (시간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· 전·현직 장관(급)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· 기업 대표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		3시간 초과 (초과 매시간당)	
	(II)	1~3시간 (시간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· 전·현직 차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· 기업 임원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
		3시간 초과 (초과 매시간당)	
	(III)	1~3시간 (시간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·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·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
		3시간 초과 (초과 매시간당)	
	(IV)	1~3시간 (시간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· 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· 조교수, 전임강사(급) 대학교수
		3시간 초과 (초과 매시간당)	

※ FT 요건 :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

다. 지도·평가 등 강사수당

지급기준	지급액 (만원)	지급대상	
1시간당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분임활동을 지도, 평가하는 강사 ·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· 공공HRD콘테스트 심사위원 · 외국공무원과의 포럼에 참석한 강사 	
1회당	10	· E-mail, 서면으로 요청시	
1편당	5	· 공공HRD콘테스트 참가 작품 서면심사	
1부당	10페이지 미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단체(분임·팀 등) 보고서 평가자(단, 페이지수, 난이도,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%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) 	
	10 이상~30페이지 미만		2
	30페이지 이상		4
기본	5부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인 보고서(논술시험 등)평가자(단, 1부 추가당 지급액은 평가 난이도·노력도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%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) 	
	10부 이내		20
	1부 추가당 (11부 이상)		0.3

※ 교육훈련 정책·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, 간담회 등 참석수당은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」의 “위원회 참석비”를 준용

※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초연설, 주제발표자에게는 50,000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.

※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‘가’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.

※ 단, 고위정책과정 정책과제보고서의 경우 단체(분임·팀 등)보고서 지급기준 적용

라. 지도선배 지도수당

지급기준	지급액 (만원)	지급대상
1일당 (취제처 전일근무)	6	교육과정에 참가하여 학습지도 및 멘토 역할 수행 <small>국외협력정보센터</small>

마. 지급특례

구 분	특례사항		비고
	지급기준	지금액(만원)	
단 체 예술공연	2인 ~ 5인(1시간)	50	※5인 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공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%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※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
	6인 ~ 10인(1시간)	60	
	11인 이상(1시간)	70	
강의시간 산 출	○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○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(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)		
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	○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-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○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○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(주제 포함)이 다른 강의		
보조강사	○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,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○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		※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%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 가능

2. 외래강사여비

- 강사여비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라 지급함.
- 단, 「공무원여비규정」 제30조 및 별표9에 의거 별표9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.
 - 민간기업체의 임·직원 : 공공기관 임·직원에게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, 불분명할 경우에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1의 제2호를 지급
 -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: 업무의 성격,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, 일반 기준은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1의 제2호를 적용

3. 원고료 지급기준

구분	지급기준		비고
지급단가	12,000원 / A4 1면		
지급한도 (기준면수)	강의교재(안)	6면 / 강의시간당	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% 범위내 지급 가능
	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	강의시간 제한없음	
A4 1면 기준	○글자크기 13p, 줄간격 160%,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25, 머리말·꼬리말 15, 또는 300단어		※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※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.5매를 A4 1면으로 산정
지급특례	○강의 교재(안)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"A4 1면당 50,000원 또는 편당 300,000원"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		
수정원고 등	○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- 70% 초과 수정시 : 전체 지급 - 30~70% 수정시 : 해당 원고료의 50%만 지급 - 30%미만 수정시 :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※ 복사원고, 표지,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하되,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※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		※ 다만,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,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 가능

§부교재: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·배부한 자료를 통칭

4.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

□ 시험시행 운영수당은 인사혁신처의 매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50% 수준으로 교육운영계획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되, 교육의 특성 및 여건,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※ 조정은 과정운영계획 수립시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원장 승인후 시행

5.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

□ 원거리 출강강사의 기차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예산과 「청탁금지법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 [별표2]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.

6.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

□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, 통·번역비 등은 KOICA 규정 및 한국외국어 대학교 통·번역센터 요율을 준용한다.